

대전보건대학교 간호대학 운영규정

2019. 05. 01. 최초제정

2022. 09. 01. 부분개정

2025. 09. 15 부분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에 근거하여 대전보건대학교 간호대학(이하 “간호대학”이라 한다)의 학사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조직 및 교육과정) ①간호대학의 인원은 학장, 학과장, 전임교원, 행정직원(행정·실습조교)으로 구성된다.

②간호대학의 교육과정은 간호학과 학사학위과정과 관련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5.09.15.>

③간호대학 교수회의

1. 간호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수회의를 둔다.
2. 교수회의는 간호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며, 학장이 그 의장이 된다.
3. 교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가. 간호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 나. 각 분야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다. 기타 간호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4. 교수회의는 간호대학 전임교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교수회의에 불참한 전임교원은 간호대학 교수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
6. 회의록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의장을 포함한 출석의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3조(학장의 임무) ①학장은 간호학 전공자로서 간호대학의 전임교원 중 학칙에 의거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간호대학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간호대학 예산 편성과 운영
3. 간호대학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4. 대학본부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5. 산학협력 및 협의회 등 대외활동

②학장은 간호대학과 학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본교의 학사행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학과장의 임무) ①학과장은 간호학 전공자로서 간호대학의 전임교원 중 학칙에 의거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간호학과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교내·외 업무를 관장한다.

1. 교육과정 및 학사전반

2. 학생지도 및 취업지도
3. 비품 및 기자재 관리 등 학과운영 전반
4. 시간강사와 조교 등 인력관리
5. 산학협력 및 협의회 등 대외활동

제5조(위원회) ①간호대학은 자체점검 및 평가, 교원관리, 실습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발·점검 등을 통해 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발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인사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실습교육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교육성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09.01., 2025.09.15>

②각 위원회는 간호대학 자체위원회로서 간호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논의하고, 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간호대학에서 자체 관장한다.<개정 2022.09.01.>

1. 간호대학 발전위원회

가. 구성

- (1) 위원장은 당해 학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2) 위원은 간호대학 전임교원과 산업체 인사 및 동문 등으로 구성한다.

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09.15>

다.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간호대학 발전계획 및 운영의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관성 여부
- (2) 간호대학 외부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대외교류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외 기타 간호대학 발전에 관련된 사항

2. 간호대학 자체평가위원회

가. 구성

- (1) 위원장은 당해 학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2) 위원은 각 영역들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평가영역별 연구위원들로 구성한다.

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자체평가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2) 인증 대비 자체평가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 (3)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
- (4) 그 외 기타 인증 및 평가와 관한 사항

3. 간호대학 인사위원회

가. 구성

- (1) 위원장은 당해 학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2) 위원은 간호학과 재직연한 10년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09.15>

다.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 (1) 간호대학 임용 대상자의 필요자격 검정요건
- (2) 교원관리에 대한 논의사항
- (3) 그 외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4. 간호대학 교육과정위원회

가. 구성

- (1) 위원장은 학과장 혹은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자로 한다.
- (2) 위원은 간호대학 전임교원 및 산업체 인사로 구성한다.

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09.15>

다.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과의 교육목적, 목표 수립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개선에 관한 사항
- (2) 교육과정 개발(편)·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3) 교육목표, 프로그램 학습성과, 교과목의 연계성, 관련성 검토 및 수정
- (4) 교과목의 지속적인 질 개선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과 교육과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 간호대학 실습교육위원회

가. 구성

- (1) 위원장은 학과장 혹은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자로 한다.
- (2) 위원은 간호대학 전임교원 및 산업체 인사로 구성한다.

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09.15>

다.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실습교육 계획 수립
- (2) 실습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3) 핵심간호술 평가에 관한 사항
- (4)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 (5) 임상실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외 기타 실습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간호대학 교원양성위원회

가. 구성

- (1) 위원장은 당해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2) 위원은 간호대학 전임교원 외 교육전문가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09.15>

다.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과정 개발·편성 및 운영

- (2) 보건교사 자격검정 기준설정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3) 교원양성기관 평가 시 보건교사 양성기관 자체평가
- (4) 그 외 기타 교원양성에 관한 중요사항

7. 간호대학 교육성과위원회

가. 구성

- (1) 위원장은 학과장 혹은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자로 한다.
- (2) 위원은 간호대학 전임교원과 산업체 인사로 구성한다.

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09.15>

다. 기능 :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체계 구축
- (2)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및 분석
- (3)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대상 교육목표 달성, 교육만족도 평가 및 분석
- (4)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률과 취업률 분석 및 지표관리
- (5) 기타 교육성과관리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09.15.>

제6조(기타) 그 외 심의가 필요한 내용은 학칙 및 간호대학 교수회의를 통하여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시행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시행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